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40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6. 6. 3.

□ **정정 사유**

- (1) 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- (2) 이익 분배 방법 변경 : 전액 분배 → 평가이익 및 매매이익 유보

□ **정정 내용**

항목	정정전	정정후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2015.10.31. 기준	<u>2016.4.30. 기준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- 트러스톤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/ 트러스톤 중장기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	채권 신용등급 하락 관련 조치 사항 반영	<u>다)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위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. 다만,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함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<u>2016.5.10. 기준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서식 개정에 따른 삭제	<u>삭제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 배분	1)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	1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



	<p>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다만, 법제 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.</p> <p>2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.</p>	<p>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<u>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</p> <p><u>※ “2016 년 6 월 3 일” 이후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u></p>
<p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p>		
<p>1. 재무정보</p>	<p>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</p>	<p><u>2016.5.10. 기준</u></p>
<p>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</p>	<p>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</p>	<p><u>2016.5.10. 기준</u></p>


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1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<u>2016.5.10. 기준</u>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	법 개정사항 반영	⑤ 투자설명서 변경(단, 법 및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,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, <u>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</u>)